판로지원

판로
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

과기정통부 R&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**지원대상 :** 중소기업

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■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*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

※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 · 출연(연)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■ 지원내용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증서 발급(인증기간: 3년)
- 수의계약 허용
  - 조달청 중앙조달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공공기관에서 직접계약이 가능하며,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
- 구매면책 적용
  -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'구매면책' 부여되어 공공부문 판로 구축에 긍정적 효과
-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
  - 범부처 차원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까지 직접적으로 연계 지원
- 혁신장터 물품등록 가능
  -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■ 신청방법

온라인 회원가입 → 온라인상 신청서와 설명서, 규격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→ 온라인 제출

[추진절차]

	주요내용	담당기관	세부내용
추진	제품등록	신청기업	•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※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	↓ 신청	신청기업	•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
	↓ 제품평가 · 심사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• 신청서류 검토 • 혁신성 평가(1차 서류심사, 2차 현장심사, 3차 종합심사)
	↓ 심의예정공고	과기정통부	•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
	↓ 조달정책심의위 심의 · 의결	기획재정부	•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 · 의결 •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(과기정통부 -> 조달청)

■ 문의처
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홈페이지 (skip.or.kr)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(☎ 02-3460-9025, 9087)